<붙 임 3>

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 대상 문화재

지 정 별	문 화 재 명	소 재 지	비 고
중민 140	영동 규당고택	영동읍 계산리 417-2	
중민 142	영동 김참판고택	양강면 괴목리 401-2	
중민 144	영동 성위제가옥	학산면 봉림리 708	
보물 532	영동 영국사 승탑	양산면 누교리 산138-1	
보물 533	영동 영국사 삼층석탑	양산면 누교리 1396	
보물 534	영동 영국사 원각국사비	양산면 누교리 산138-1	
보물 535	영동 영국사 망탑봉삼층석탑	양산면 누교리 산139-1	
보물 984	영동 신항리 석조여래삼존입상	용산면 신항리 산135-1	
보물 1371	영동 반야사 삼층석탑	황간면 우매리 151-1	

01. 영동 규당고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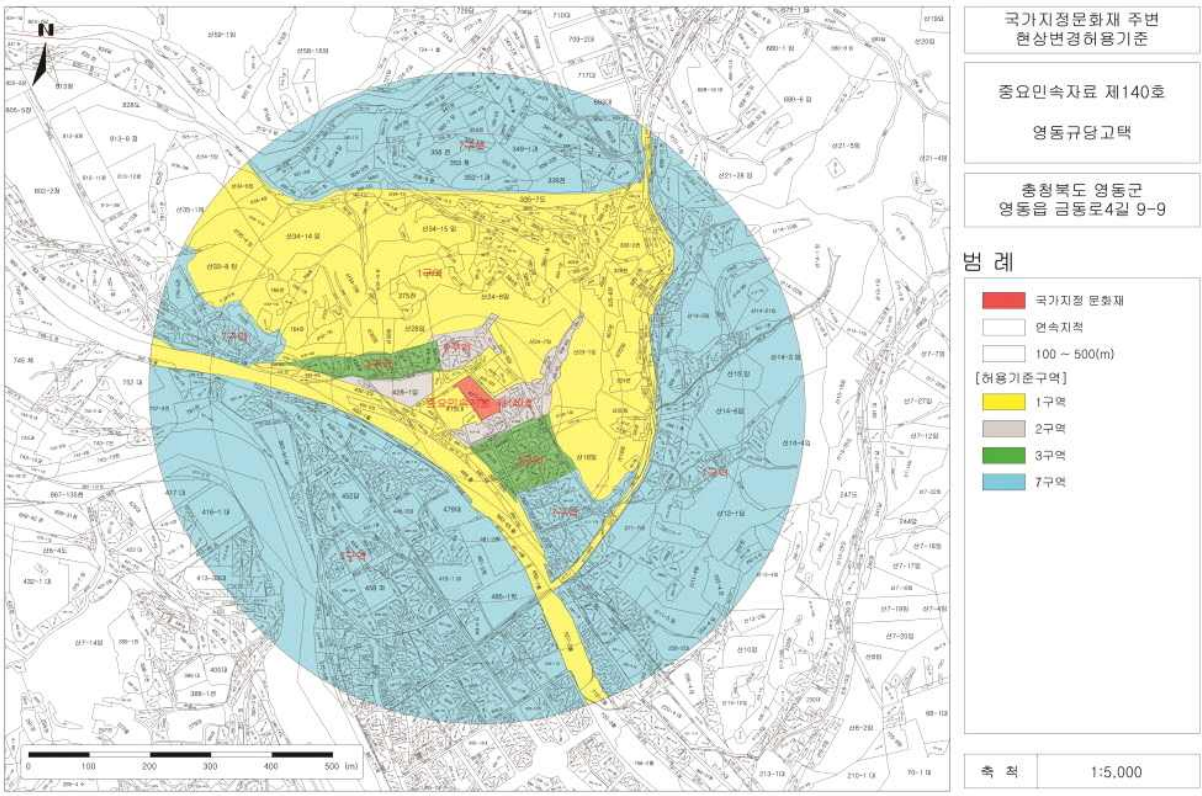

구 분		허용기준	
		평지붕	경사지붕(경사가 3:10이상)
문화재	지정구역 / 보호구역	◦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개별심의	
1구역			
2구역		◦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신축·증축 허용	◦ 건축물 최고높이 7.5m이하 신축·증축 허용
3구역		◦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신축·증축 허용	◦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신축·증축 허용
4구역		◦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신축·증축 허용	◦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신축·증축 허용
7구역		◦ 시·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	
공통사항		· 기존 건축물(시설물 포함)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.보수를 허용함 다만 재.개축시는 아래 기준을 적용함 - 제1구역 : 개 보수만 허용 / 제2구역 : 재.개축도 허용(단 한옥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우만 적용 이외의 것은 문화재청장의 허가사항임) ·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 사항 -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 - 대기오염 배출시설(대기환경보전법), 소음진동 배출시설(소음·진동규제법), 폐기물 처리시설(폐기물 관리법), 위험물 제조시설(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), 분뇨 처리시설(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) 등은 개별 심의 -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 -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. (단,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-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. - 건축물의 허용기준의 적용 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,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 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기준을 적용(※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제1구역으로 적용	

02. 영동 김참판 고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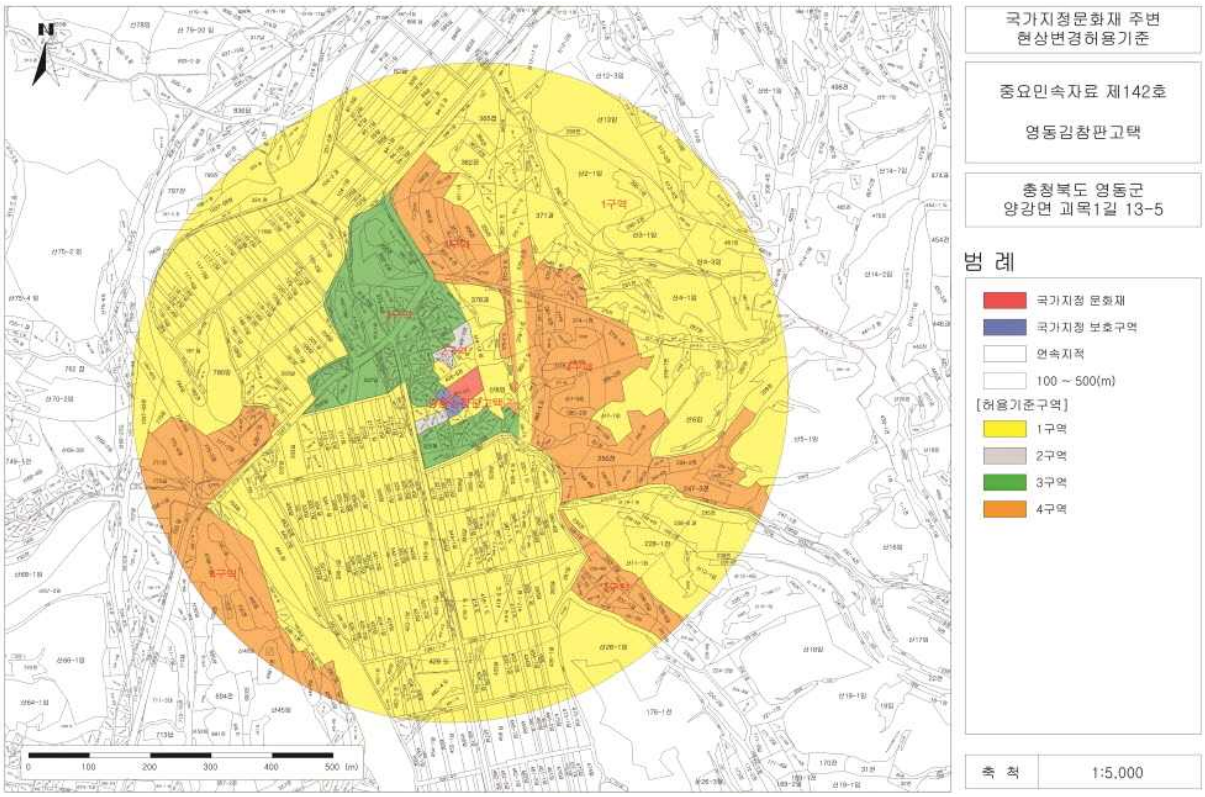

구 분	허용기준	
	평지붕	경사지붕(경사가 3:10이상)
문화재 지정구역 / 보호구역 / 1구역	◦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개별심의	
2구역	◦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신축·증축 허용	◦ 건축물 최고높이 7.5m이하 신축·증축 허용
3구역	◦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신축·증축 허용	◦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신축·증축 허용
4구역	◦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신축·증축 허용	◦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신축·증축 허용
공통사항	· 기존 건축물(시설물 포함)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.보수를 허용함 다만 재.개축시는 아래 기준을 적용함 - 제1구역 : 개 보수만 허용 / 제2구역 : 재.개축도 허용(단 한옥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우만 적용 이외의 것은 문화재청장의 허가사항임) ·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 사항 -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 - 대기오염 배출시설(대기환경보전법), 소음진동 배출시설(소음·진동규제법), 폐기물 처리시설(폐기물 관리법), 위험물 제조시설(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), 분뇨 처리시설(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) 등은 개별 심의 -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 -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. (단,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-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. - 건축물의 허용기준의 적용 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,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 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기준을 적용(※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제1구역으로 적용	

03. 영동 성위제가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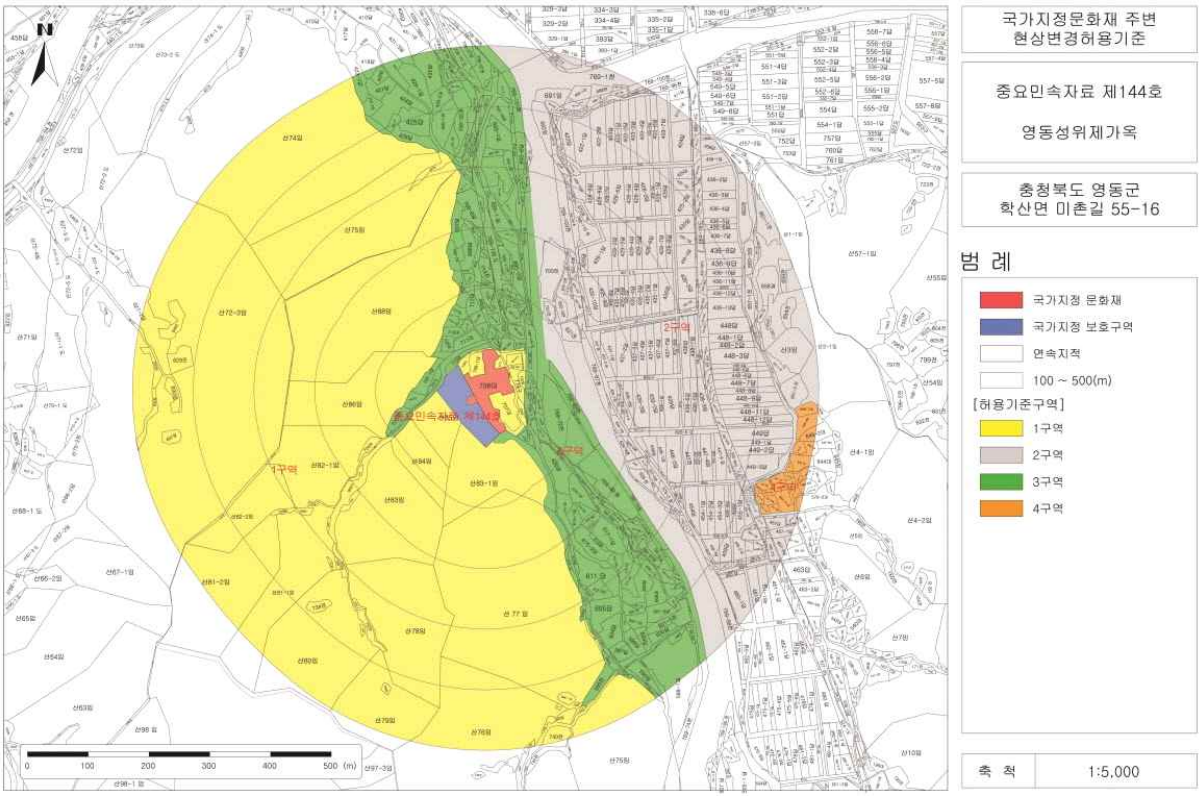

구 분	허용기준	
	평지붕	경사지붕(경사가 3:10이상)
문화재 지정구역 / 보호구역 1구역	◦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개별심의	
2구역	◦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신축·증축 허용	◦ 건축물 최고높이 7.5m이하 신축·증축 허용
3구역	◦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신축·증축 허용	◦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신축·증축 허용
4구역	◦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신축·증축 허용	◦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신축·증축 허용
공통사항	· 기존 건축물(시설물 포함)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.보수를 허용함 다만 재.개축시는 아래 기준을 적용함 - 제1구역 : 개 보수만 허용 / 제2구역 : 재.개축도 허용(단 한옥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우만 적용 이외의 것은 문화재청장의 허가사항임) ·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 사항 -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 - 대기오염 배출시설(대기환경보전법), 소음진동 배출시설(소음·진동규제법), 폐기물 처리시설(폐기물 관리법), 위험물 제조시설(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), 분뇨 처리시설(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) 등은 개별 심의 -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 -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. (단,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-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. - 건축물의 허용기준의 적용 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,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 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기준을 적용(※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제1구역으로 적용	

04. 영동 영국사 승탑 (영국사 삼층석탑, 영국사 원각국사비, 영국사 망탑봉삼층석탑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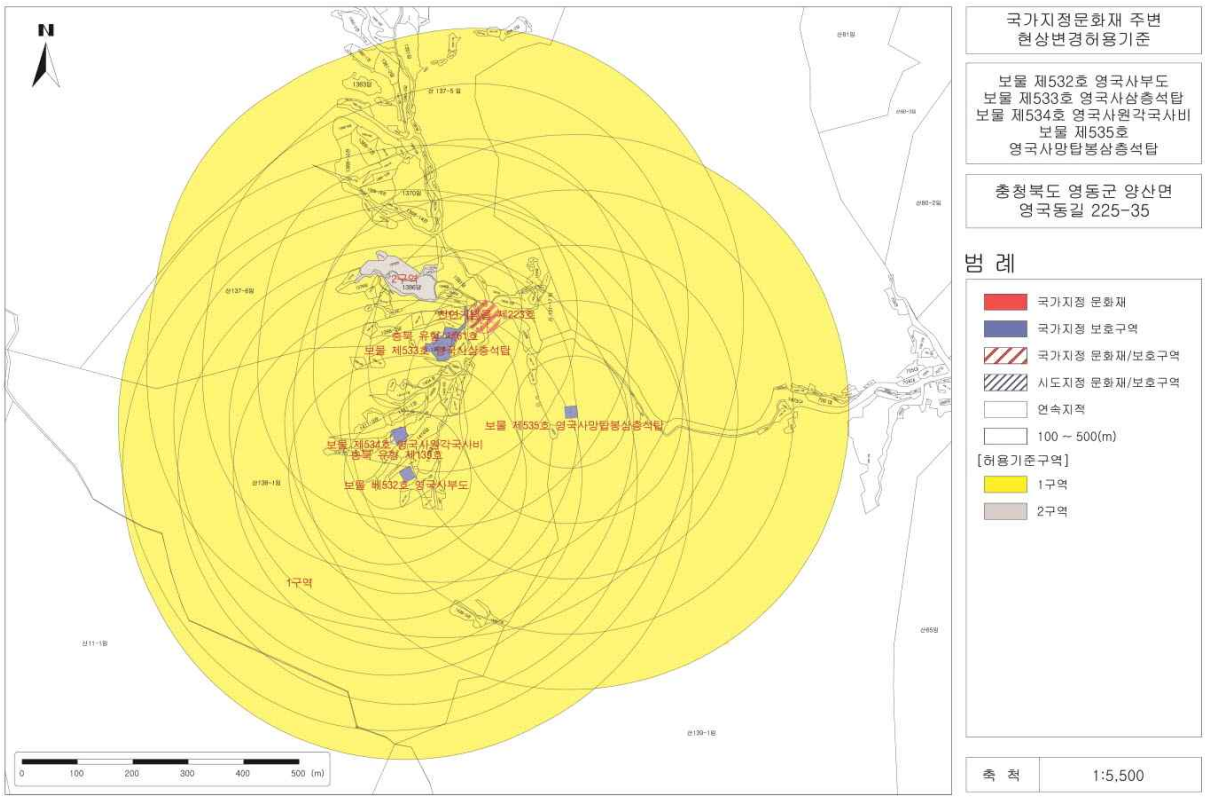

구 분	허용기준	
	평지붕	경사지붕(경사가 3:10이상)
문화재 지정구역 / 보호구역 / 1구역	◦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개별심의	
2구역	◦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신축·증축 허용	◦ 건축물 최고높이 7.5m이하 신축·증축 허용
공통사항	· 기존 건축물(시설물 포함)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.보수를 허용함 다만 재.개축시는 아래 기준을 적용함 - 제1구역 : 개 보수만 허용 / 제2구역 : 재.개축도 허용(단 한옥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우만 적용 이외의 것은 문화재청장의 허가사항임) ·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 사항 -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 - 대기오염 배출시설(대기환경보전법), 소음진동 배출시설(소음·진동규제법), 폐기물 처리시설(폐기물 관리법), 위험물 제조시설(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), 분뇨 처리시설(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) 등은 개별 심의 -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 -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. (단,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-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. - 건축물의 허용기준의 적용 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,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 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기준을 적용(※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제1구역으로 적용	

05. 영동신항리 석조여래삼존입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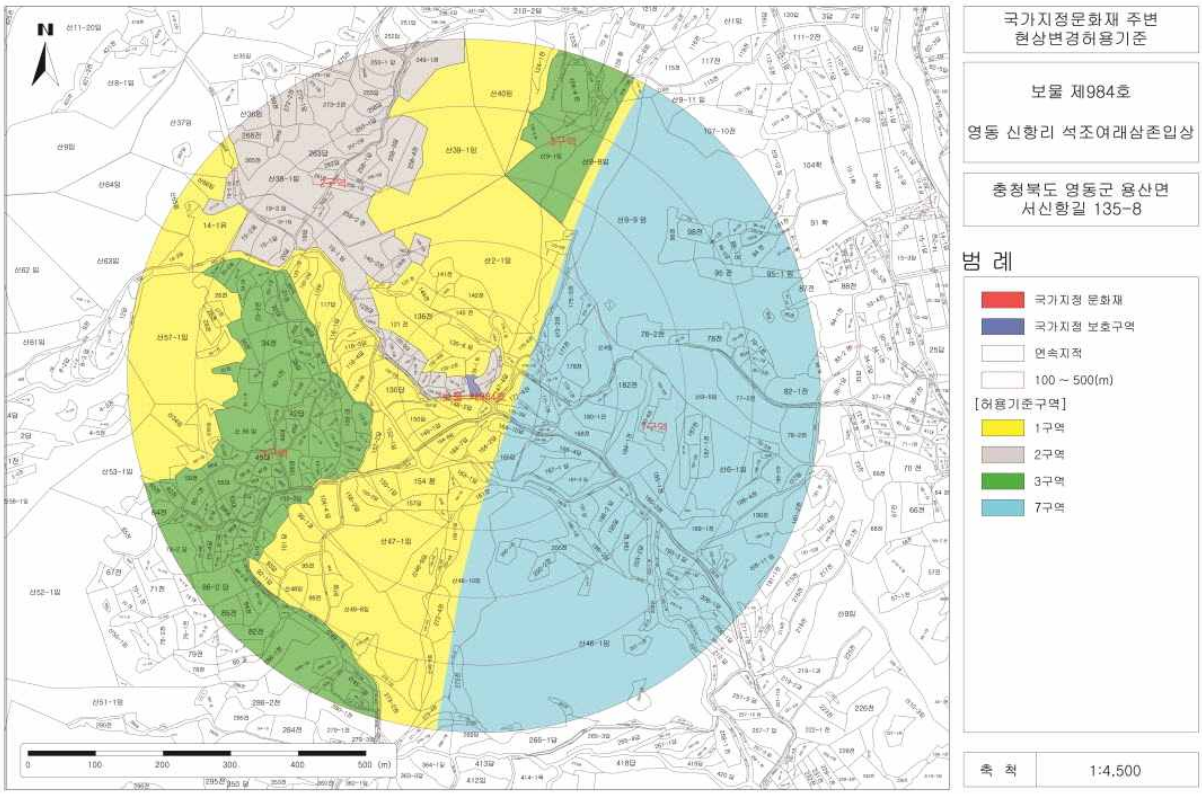

구 분	허용기준	
	평지붕	경사지붕(경사가 3:10이상)
문화재 지정구역 / 보호구역 / 1구역	◦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개별심의	
2구역	◦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신축·증축 허용	◦ 건축물 최고높이 7.5m이하 신축·증축 허용
3구역	◦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신축·증축 허용	◦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신축·증축 허용
7구역	◦ 시·군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	
공통사항	· 기존 건축물(시설물 포함)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.보수를 허용함 다만 재.개축시는 아래 기준을 적용함 - 제1구역 : 개 보수만 허용 / 제2구역 : 재.개축도 허용(단 한옥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우만 적용 이외의 것은 문화재청장의 허가사항임) ·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 사항 -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 - 대기오염 배출시설(대기환경보전법), 소음진동 배출시설(소음·진동규제법), 폐기물 처리시설(폐기물 관리법), 위험물 제조시설(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), 분뇨 처리시설(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) 등은 개별 심의 -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 -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. (단,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-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. - 건축물의 허용기준의 적용 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,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 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기준을 적용(※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제1구역으로 적용	

06. 영동 반야사 삼층석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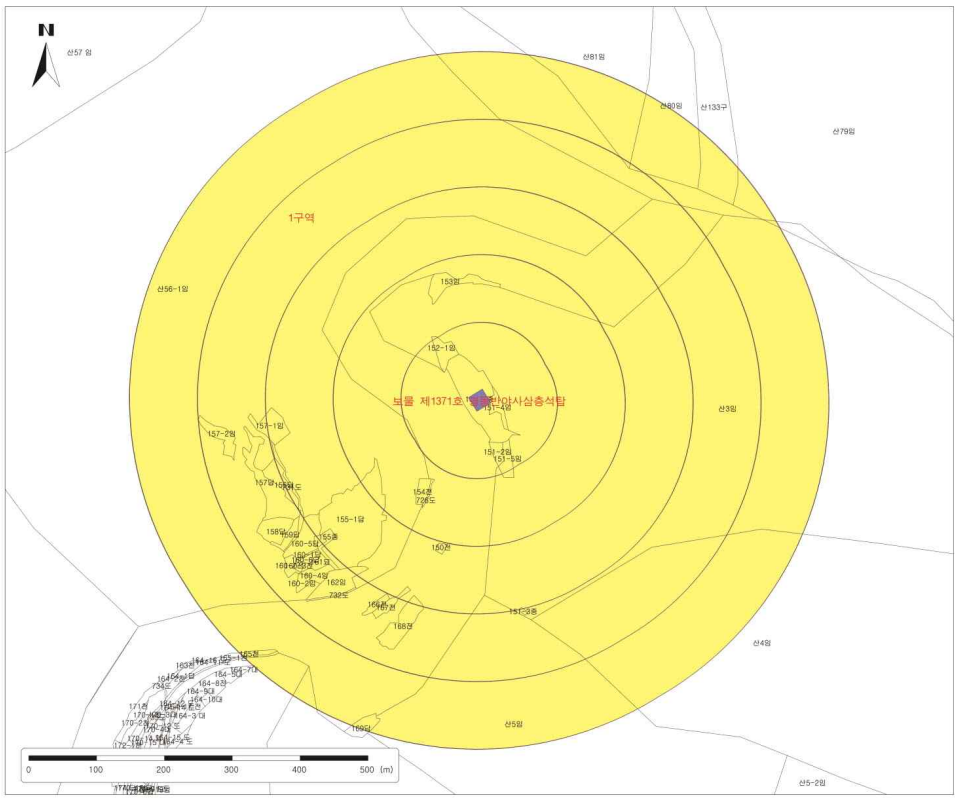

국가지정문화재 주변
현상변경허용기준

보물 제1371호

영동반야사삼층석탑

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
백화산로 652

범 례

국가지정 문화재
국가지정 보호구역
연속지적
100 ~ 500(m)
[허용기준구역]
1구역

축 척 | 1:4,500

구 분	허용기준	
	평지붕	경사지붕(경사가 3:10이상)
문화재 지정구역 / 보호구역 / 1구역	◦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개별심의	
2구역	◦ 건축물 최고높이 5m이하 신축·증축 허용	◦ 건축물 최고높이 7.5m이하 신축·증축 허용
공통사항	· 기존 건축물(시설물 포함)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.보수를 허용함 다만 재.개축시는 아래 기준을 적용함 - 제1구역 : 개 보수만 허용 / 제2구역 : 재.개축도 허용(단 한옥이외의 것을 한옥형태로 하는 경우만 적용 이외의 것은 문화재청장의 허가사항임) · 기타 문화재청장 허가 사항 -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. - 대기오염 배출시설(대기환경보전법), 소음진동 배출시설(소음·진동규제법), 폐기물 처리시설(폐기물 관리법), 위험물 제조시설(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), 분뇨 처리시설(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) 등은 개별 심의 - 높이 3m 이상의 절·성토를 수반하거나, 높이 3m 이상의 법면, 석축,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.(지하층의 절토는 제외,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) -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. (단,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-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. - 건축물의 허용기준의 적용 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, 건축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 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기준을 적용(※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제1구역으로 적용	